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14 선고 2020가단507869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훈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산우

담당변호사 정치화

변 론 종 결 2021. 5. 10.

판 결 선 고 2021. 6. 14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1, 2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B 사이에 2015. 3. 16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
나. 피고는 B에게 각 전주지방법원 등기가 2015. 3. 19. 접수 제322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2.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B 사이에 2015. 3. 16. 체결된 매매계약을 107,694,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,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107,694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B에 대한 채권

(1) B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3. 6.경 약사인 C에게 C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의 승낙을 얻은 후 2013. 6. 3. C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, 그때부터 2013. 12. 16.까지 C을 고용하여 그에게 월 약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조제, 판매하게 하고, 자신은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약국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하였다.

(2)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. 12. 16.경부터 2015. 3. 14.경까지 약사인 D를 고용하여 월 약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, 약국을 개설 · 운영하였다.

(3) 원고는 B이 운영하던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후 2014. 11.경 경찰에 B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. 이에 따라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, B은 그 수사결과를 토대로 2017. 6. 2.경 기소되었다.

(4) B은 2018. 5. 31.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원고로부터 요양급여 합계 697,597,63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죄,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.

(5) 원고는 B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후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① 2017. 2. 22.경 B로부터 640,609,040원을, ②

2017. 12. 27.경 B로부터 297,973,130원을 각 환수한다는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였고, 그 처분은 그 무렵 B에게 각 통지되었다(이하 원고의 B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따른 채권을 ‘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채권’이라 한다).

나. B은 2015. 3. 16.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B이 피고에게 B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하고, 별지 목록 기재 1, 2, 3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‘이 사건 O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매도하는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B은 2015. 3. 19.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2015. 3. 19. 접수 제322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라. 피고는 2017. 5. 15. E, F에게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4. 29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, 5, 6, 7,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 이후에 징수처분에 따라 구체적 채권으로 확정되기는 하였다. 그러나 피고가 2015. 3. 16. 이 사건 각 부동산관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위 징수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, 즉 약사가 아닌 B이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이미 발생하여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등의 사실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), 원고는 그 이전부터 B에 대한 행정조사를 거쳐 수사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로 원고는 2017. 2. 22.경 및 2017. 12. 27.경 B에게 징수처분을 한 후 이를 고지함으로써 구체적인 부당이득징수 채권으로 확정되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,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3. 사행행위 성립 및 그 취소와 원상회복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위와 같이 A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B의 사해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,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. 피고의 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기존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, 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,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기존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,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후 2014. 11.경 경찰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, B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.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주장하나, 을 제8호증의 기재는 사해행위 당사자인 B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,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

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3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3 부동산의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는 107,694,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1, 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1, 2 부동산에 관한 위 2015. 3. 19.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또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인 107,694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7,694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진영

(별지)

목 록

1. 전북 완주군 H 대 843㎡
2. 전북 완주군 I 대 26㎡
3. 전북 완주군 J 대 279㎡. 끝.